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손자녀돌보미 제도 도입 및 비용 지원 〉

■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629호)

2024. 8.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 목 차 】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 손자녀돌보미 제도 도입 및 비용 지원	3
【참고자료 1】 지방자치단체 손자녀돌보미 제도 운영 사례	1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소병훈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6. 19.

3. 회부연월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고용노동부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휴원·휴교 기간 조부모 등이 부모 대신 자녀를 돌본다는 응답이 42.6%로 가장 많은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부모는 영유아 양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하지만, 부모가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맞벌이 부모 대신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양육자인 조부모에 대한 지원이 없는 실정임. 따라서 조부모가 부모 대신 본인의 손자녀 보육을 담당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등 실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신의 손자녀를 양육하려는 조부모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손자녀돌보미가 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4 신설 등).

Ⅲ. 검토의견

□ 손자녀돌보미 제도 도입 및 비용 지원

개정안은 영유아의 양육에 도움을 주는 조부모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는 등 요건을 갖추어 ‘손자녀돌보미’로 신고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및 제34조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6. “손자녀돌보미”란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시간 동안 손자녀인 영유아를 보육하는 조부모로서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가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영유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 ----- -----서비스 또는 제34조의4에 따른 손자녀돌보미-----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34조의4(손자녀돌보미 신고 등)</u> ① 손자녀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제9조의2에 따른 보호자 교육을 받는 등 요건을 갖추어 손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손자녀돌보미에게 보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요건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 대상·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u>제34조의4(비용 지원의 신청) ① · ② (생략)</u> <u><신 설></u>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u>제34조의5(조사·질문) ①</u>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u>제34조의5(비용 지원의 신청) ① · ② (현행과 같음)</u> ③ 손자녀돌보미는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 ----- -----. <u>제34조의7(조사·질문) ①</u> ----- -----

은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활동,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용 지원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의 주거,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 ⑦ (생략)

제34조의7(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제34조의4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서면 등의 방식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0조의2(보육비용 지원액 등의 환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34조의5제1항 또는 제3항--~~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34조의8(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① -----

~~-----제34조의5-----~~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의2(보육비용 지원액 등의 환수) ① -----

~~-보호자 또는 손자녀돌보미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 제34조의2 또는 제34조의4제2항-----~~

②・③ (생략) 제54조(벌칙)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의3. (생략)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u>제34조 및 제34조의2</u>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 5. ~ 8. (생략)	-----. ②・③ (현행과 같음) 제54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1. ~ 3의3. (현행과 같음) 4. ----- -----<u>제34조, 제34조의2 또는 제34조의4제2항</u>----- ----- 5. ~ 8. (현행과 같음)
---	---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34조는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원칙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과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 보육 서비스(6개월~36개월 미만)’를 병행하여 지원하고 있음.¹⁾

다만, 부모급여 제도²⁾의 도입으로 0~23개월 영유아는 ‘양육수당’이 아닌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1세 미만은 월 100만원, 1세 이상 2세 미만은 월 50만원을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서비스) 형태로 지급함.³⁾

1)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시간제보육 서비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에 따른 무상보육 및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른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종류, 지원대상, 지원방법, 그 밖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가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영유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보편수당 지급 수준을 확대할 필요로 도입되었으며, 육아휴직급여의 소득 대체율을 제고하고, 프리랜서·자영업자 등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 보완을 목적으로 함. ※ 단, 부모급여는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함.

3) 「아동수당법」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가정양육수당 연령별 지원금액】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월령(개월)	지원금액	월령(개월)	지원금액	월령(개월)	지원금액
24 ~ 35개월	100천원	24 ~ 35개월	156천원	24 ~ 35개월	200천원
36 ~ 85개월	100천원	36 ~ 47개월	129천원	36 ~ 85개월	100천원
		48 ~ 85개월	100천원		

자료: 교육부

【시간제보육 사업 개요】

가. 정의

-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나.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다.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자 (6~36개월 미만의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

라. 사업 기관

(제공기관) 시·군·구로부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 받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관리기관)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마. 이용 및 지원시간

구분		내용
이용대상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내/외국인)
지원대상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자
지원시간		월 60시간
보육료	이용단가	시간당 5천원
	지원단가	시간당 3천원
	부모부담	시간당 2천원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경우 전액 본인 부담 (시간당 5천원)

자료: 교육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p. 292-300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아동수당의 추가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1세 미만의 아동: 매월 100만원
2.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 매월 50만원

개정안은 영유아의 양육에 도움을 주는 조부모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는 등 ‘손자녀돌보미’로 요건을 갖추는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양육수당’과 별개로 ‘손자녀돌보미’에게 보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맞벌이 부모 대신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실질적 양육자인 조부모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비용 지원을 통해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한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3년 기준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유배우자 가구 수는 159만 가구이고, 이 중에서 맞벌이 가구는 81만 8천 가구로 51.5% 수준이며,

2021년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유아 양육가정이 기관이 아닌 조부모, 공공 아이돌보미, 민간 육아도우미 등 개인으로부터 양육지원서비스를 받는 아동은 전체의 11.5% 수준으로, 이들 중 기관이용 없이 단독으로 개인으로부터 양육지원을 받는 아동은 20.7%이고, 제공자는 비동거 조부모 84.9%, 동거 조부모 11.9%, 동거 친인척 3.2% 순임.

따라서, 영유아 양육 가정의 맞벌이 현황과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육아 가정에서는 부모의 양육 공백을 대부분 조부모를 통해 지원받고 있음을 고려할 때, ‘손자녀돌보미’ 제도 도입 및 비용 지원을 통해 조부모의 육아 부담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고, 가정양육 강화 및 맞벌이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 현황】

(단위: 천가구,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유배우 가구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비율	유배우 가구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비율	유배우 가구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비율
계	4,215	2,247	53.3	4,121	2,197	53.3	4,095	2,326	56.8
6세 이하	1,708	807	47.3	1,667	794	47.6	1,590	818	51.5
7 - 12세	1,445	799	55.3	1,428	793	55.6	1,496	876	58.6
13 - 17세	1,062	641	60.3	1,025	611	59.5	1,010	632	62.6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23, 2024.07.03, 막내 자녀 연령별 맞벌이 가구(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

【영유아구분 및 연령별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률】

(단위: %, (명))

구분		영유아 구분		연령						전체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개인양육 단독이용		42.9	0.9	85.5	22.6	10.1	-	2.4	-	20.7
혈연		38.9	0.9	76.5	20.9	10.1	-	2.4	-	18.8
동거 조부모		10.4	27.8	2.9	14.2	18.6	-	-	100.0	11.9
비동거 조부모		86.2	72.2	97.1	80.5	74.1	100.0	-	-	84.9
동거 친인척		3.5	-	-	5.3	7.3	-	-	-	3.2
비혈연		4.0	-	9.0	1.7	-	-	-	-	1.9
공공 아이돌보미		23.2	-	-	100.0	-	-	-	-	23.2
민간 육아도우미		76.8	-	100.0	-	100.0	-	-	-	76.8
기관 병행 이용 포함		57.1	99.1	14.6	77.4	89.9	100.0	97.6	100.0	79.3
(수)		(190)	(208)	(90)	(54)	(46)	(56)	(75)	(77)	(398)
2018 년	혈연	30.9	31.4	32.9	36.1	25.1	27.4	33.0	32.6	31.2
	비혈연	1.3	0.4	-	2.8	1.1	1.2	0.5	-	0.8
	중복 이용	43.5	92.2	5.6	41.6	74.8	92.3	91.1	92.7	71.3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가구조사 보고 p. 471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손자녀돌보미’에 대한 비용 지원은 양육수당 등과의 중복지급 우려가 있음.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비용으로, 부모가 아닌 조부모가 실질적 보호자인 경우 조부모에게도 지급할 수 있음.

또한, 현재 자녀 양육과 관련된 정부 지원은 제도 간 중복지급 금지를 원칙⁴⁾으로 하고 있으며, 자녀의 어린이집·유치원 등 기관이용 여부, 영유아의 연령, 가구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 4) ▶ 정부는 지원 중복방지를 위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상호 변경하도록 하고 있음
- 영유아복지(보육료, 유아학비, 부모급여, 양육수당)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 영아종일제 자격 변경 시 서비스 제공은 다음의 기준으로 함
 - 변경 신청 해당 월에는 기존 서비스를 말일까지 제공
 - 신규자격 서비스는 다음 달 1일부터 개시
 -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간 전환 시는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함
- ▶ 정부 지원 중복금지 관리·감독
- 읍·면·동 및 시·군·구 담당자는 보육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정부지원 중복금지, 부모급여 등의 지원 여부에 대한 확인 철저
 - 부정한 방법으로 중복 지원받은 경우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하고 처벌

【자녀 양육 관련 정부 지원(수당)】

구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아동수당
금액	0세반 54.0만원 1세반 47.5만원 2세반 39.4만원	10만원 (24~86개월 미만)	100만원 (0~11개월)	10만원 (0~86개월 미만)
	누리공통과정 3~5세반 28만원		50만원 (12~23개월)	
대상	취학 전 영유아 (소득무관 전계층)	어린이집 및 유치원 미이용 취학 전 24~86개월 미만 영유아	24개월 미만 영아	만8세 미만 모든 아동
방식	바우처	현금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서비스)	현금
주기	매월	매월	매월	매월
법적 근거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아동수당법	아동수당법
소관 부처	교육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자료: 교육부

【양육지원서비스 현황】

구분	시간제보육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대상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6~36개월 미만 영아	만6세 미만 취학전 아동	만12세 이하 아동 영아종일제 (3~36개월 이하) 시간제 (3개월~만 12세 이하)	만18세 미만 아동
내용	단시간·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시간단위로 보육시설 이용	부모교육, 놀이공간 제공, 도서 및 장난감 대여 등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돌봄 품앗이 구성(이웃 간 양육정보 교류, 놀이 및 문화체험)
이용 금액	5천원 (정부 3천원, 본인 2천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법적 근거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	아이돌봄지원법
소관 부처	교육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자료: 교육부

둘째, ‘손자녀돌보미’ 제도가 도입되면 조부모에게 돌봄을 받을 수 없는 가정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어린이집·유치원 등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양육 가정의 경우 조부모 외에도 친인척이나 여성가족부가 실시하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소득수준, 거주지역 등에 따른 차등지원)⁵⁾’ 혹은 민간 육아도우미를 통해 양육을 지원받는 상황으로, 현실적으로 조부모로부터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아울러, ‘손자녀돌보미’ 제도는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사업’과 ①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양육서비스로 ②육아도우미와 같이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③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 양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아이돌봄 지원법」과의 관계 검토가 요구됨.

5) 「아이돌봄 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육아도우미”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및 부모의 취업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은 서비스의 종류, 해당 지역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셋째, 개정안은 손자녀돌보미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내용을 두고 있으나,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의 관계가 가족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실제 양육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점에서 관리·감독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부정수급 방지 등 제도 도입에 따른 보완책 마련도 필요해 보임.

또한, 구체적인 손자녀돌보미의 신고 요건 및 방법, 비용 지원 대상·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⁶⁾ <참고자료 1: 지방자치단체 손자녀돌보미 제도 운영 사례>

교육부는 가족 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6) 개정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손자녀돌보미에게 보육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2,157억원, 2029년 2,002억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조 223억원(연평균 2,044억원)임.

<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5~2029년 >

(단위: 억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손자녀돌보미 보육 비용 지원 (안 제34조의4 신설)	2,157	2,060	2,012	1,992	2,002	10,223	2,044

주: 추가재정소요의 추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으며, 지원 대상이 되는 손자녀돌보미의 범위, 보육 비용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될 수 있음

- 1) 보육 비용 지원액은 손자녀돌보미에게 양육되는 영유아의 수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매월 정액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
- 2) 손자녀돌보미에게 양육될 영유아의 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0~5세)에 따른 연령별 영유아의 수에 낮 시간 동안 조부모에게 양육되는 영유아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 3) 월 지원 단가는 시간제보육의 월 지원 한도(80시간)에 시간당 지원 단가(3,000원)를 곱한 24만원으로 하고 추계기간 동안 해당 단가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 시행중인 가정양육수당과 중복지급 될 우려가 있는 점과 조부모 돌봄을 받을 수 없는 가정과의 형평성 문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가족관계라는 점에서 부정수급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92

【참고자료 1】 지방자치단체 손자녀돌보미 제도 운영 사례

구분	서울	광주
신청 자격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 24~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중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조부모 나이 불문)	○ 6세 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조부모 ○ 쌍둥이 또는 3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또는 조손가정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조부모 자격 검증	○ 온라인 사전교육 (기본교육 30분, 돌봄교육 90분)	○ 양성교육(최소 16시간 이상) 및 보수교육(10시간) 과정을 수료한 자에 한해 손자녀돌보미 등록 후 활동
지원 방법	○ 현금지급(지원금액): 영아1명 월30만원, 2명 월45만원, 3명 월60만원 ○ 지원조건 : 조력자 월 40시간 돌봄 수행 시	○ 현금지급 (계좌이체) - (종일돌봄)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1일 8시간 이상) 30만원 - (시간돌봄) 보육시설 이용 아동(1일 4시간 이상) 20만원
지원 현황	친인척형 4,536명('24. 6월 기준)	월 평균 170세대('24. 6월 기준)
사후 관리 방법	돌봄 활동계획서 및 이행서약서 제출, 사전교육 실시 → 돌봄 시간 제출 (부모 및 조부모 간 확인서류 작성) → 전문 모니터링단 운영(전화(영상) 통화 + 현장방문)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돌봄 활동상황 점검, 월 활동 월보 제출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건수	1건(손자녀 돌보미 수당 지급 중단)	해당사항 없음

자료: 교육부